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총각네야채가게』 정보공개서

(주)자연의모든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자연의모든것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09010038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9. 08. 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 10. 17.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사업본부 (주)자연의모든것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가락동, 유나플라자)		
전화번호	02-405-6800	팩스번호	02-407-7407
가맹사업 담당부서	F/C 사업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02-405-6850
홈페이지	www.chonggakne.com	담당자 이메일	ninehc@chonggak.net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가맹본부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 서류

[별첨 1] 2023년(17기), 2022년(16기), 2021년(15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별첨 2] 가맹본부가 대리점이나 일반소매점을 통해 대체재 상품을 판매하는 현황

[별첨 3]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기타 온라인몰을 통해 대체재 상품을 판매하는 현황

1. 가맹본부 소개

브랜드 소개

KOREA No.1 FRUIT & VEGETABLE

중각네는 20년의 역사를 지닌 과일 & 채소 전문 유통 브랜드로, 국내 5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각네는 1998년 대치동 1호점을 선보인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과일과 채소 등의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50여개 중각네 매장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달콤한 과일 등의 신선식품, 다양한 간식제품과 타 프랜차이즈와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Everday FUN! Everyday FRESH!

중각네는 늘 신선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가락시장에서 구매전문가들을 통해

최고의 상품만을 엄선하여 당일 새벽, 전 매장에 신선한 식품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일구매 & 당일판매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자연의모든것			
영업표지	『총각네야채가게』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가락동, 유나플라자)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07.05.	2007.07.16.	강명균, 박윤수	02-405-6800	02-407-7407
법인등록번호	110111-3713347	사업자등록번호	215-87-04574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 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공동 대표이사)	강명균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 야채가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가락동, 유나플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명균, 박윤수	02-405-6800	02-407-740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공동 대표이사)	박윤수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 야채가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가락동, 유나플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명균, 박윤수	02-405-6800	02-407-740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조성용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 야채가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가락동, 유나플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명균, 박윤수	02-405-6800	02-407-740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배정수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 야채가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가락동, 유나플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명균, 박윤수	02-405-6800	02-407-74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총각네야채가게』	
상 호	『총각네야채가게』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총각네 야채가게	상표 등록번호 : 제4101226170000호
광 고	1. 가맹본부 소개 참조	http://chonggakne.com/
그 밖의 영업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660,906,566	2,567,785,209	7,093,121,357	39,412,138,235	1,483,873,330	1,243,885,523
2022년	9,571,910,744	1,488,118,445	8,083,792,299	34,498,444,056	872,482,968	990,670,942
2023년	8,478,867,689	1,337,619,411	7,141,248,278	30,066,670,268	-155,105,151	57,455,979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주)자연의모든것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 중 일부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표기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했던 직위
강명균	공동대표이사	2017.08.03. ~ 현재	(주)자연의모든것 공동대표이사
박윤수	공동대표이사	2024.03.30. ~ 현재	(주)자연의모든것 공동대표이사
조성용	이사	2019.06.27. ~ 현재	(주)자연의모든것 사내이사
배정수	감사	2019.06.27. ~ 현재	(주)자연의모든것 감사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3	4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해당 없음 : 최근 3년 동안 당 사 및 당 사의 특수관계인은 『충각네야채가게』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중각네 아재가게	35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10.22	출원 제4120040011880호 등록 제410122617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10.22.
상표 (서비스표) 이영석의 중각네	35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10.22	출원 제4120040011881호 등록 제410122618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10.22.
	41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08.24	출원 제4120040011882호 등록 제410120217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08.24.
	43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06.09	출원 제4120040011883호 등록 제410117324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06.09.
상표 중각네	35류	출원 2003.10.31 등록 2005.05.13	출원 제4120030023648호 등록 제410116329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05.13.
상표 (서비스표) 중각네	16류	출원 2005.12.01 등록 2006.09.26	출원 제4020050056333호 등록 제400679827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6.09.26.
	29류	출원 2006.06.02 등록 2007.07.25	출원 제4020060029273호 등록 제400718259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7.07.25.
	30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06.09	출원 제4020040024217호 등록 제400620688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06.09.
	31류	출원 2006.06.02 등록 2007.03.27	출원 제4020060029274호 등록 제400704069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7.03.27.
	35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10.22	출원 제4120040011877호 등록 제410122616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10.22.
	38류	출원 2005.12.01 등록 2006.11.20	출원 제4120050027362호 등록 제410140422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6.11.20.
	41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08.24	출원 제4120040011878호 등록 제410120215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08.24.
	43류	출원 2004.05.31 등록 2005.08.24	출원 제4120040011879호 등록 제410120216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25.08.24.
서비스표 	43류	출원 2009.09.07 등록 2011.04.01	출원 제4120090021065호 등록 제410208698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31.04.01.
서비스표 	43류	출원 2009.09.07 등록 2011.04.01	출원 제4120090021066호 등록 제4102086970000호	(주)자연의 모든것	2031.04.01.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주)자연의모든것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4년 8월 8일

※ 『총각네야채가게』 직영사업을 시작한 날짜 : 1998년 6월 22일

2. 『총각네야채가게』 연혁

☞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총각네야채가게	총각네야채가게	이영석	2004.08.08.~2007.07.04.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1-4 태안빌딩 3층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김병철	2007.07.05.~2012.05.17.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3-4 유나플라자 6층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이영석	2012.05.18.~2017.05.22.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 (가락동, 유나플라자)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이영석 윤석제	2017.05.23.~2017.08.02.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 (가락동, 유나플라자)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강명균 윤석제	2017.08.03.~2019.06.26.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 (가락동, 유나플라자)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강명균 이관중	2019.06.27.~2021.03.29.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 (가락동, 유나플라자)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강명균 이강표	2021.03.30.~2024.03.29.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 (가락동, 유나플라자)
(주)자연의모든것	총각네야채가게	강명균 박윤수	2024.03.30. ~ 현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46, 5층 (가락동, 유나플라자)

3. 『총각네야채가게』 업종

☞ 『총각네야채가게』 업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총각네야채가게	도소매업	농수산물	야채, 과일 등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1	51	0	52	50	2	45	41	4
서울	40	40	0	42	40	2	37	34	3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0	2	2	0	2	1	1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9	9	0	8	8	0	6	6	0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49	5	0	3	4	51
2022년	51	2	0	3	2	50
2023년	50	1	0	10	6	41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해당 없음 :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총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산출 가맹점 수
		총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전체	41	632,663,468	57,134,807	1,150,385,269	103,447,073	14,506,838	1,208,903	41
서울	34	655,089,005	58,767,879	1,150,385,269	103,447,073	14,506,838	1,208,903	34
부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6	482,093,305	48,209,330	779,627,613	77,962,761	262,551,311	29,443,388	6
강원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 당 사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이 직접 사용한 POS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당 사 지정 POS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의 경우 [당 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공급액 *125%]라는 산식을 통해 41개 가맹점에서 산출한 매출액을 당사가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은 개점 초기 매출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영업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가맹점 매출액은 당 사가 월 평균 매출액 산정 후 이를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 사가 추정한 매출로 실제 가맹점에서 올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3.3m²)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연간 평균 총매출액/평균 가맹점 면적(㎡)*3.3] 산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위 표에 기재된 상한과 하한 내역은 지역별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올린 매장의 매출액을 면적(3.3m²)당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 매장 크기는 최저 구. 5평부터 최고 구. 24평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추정 자료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귀하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일)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41	3,005

※ 당 사의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가맹점 계약체결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되었기에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 매장의 경우 최초가맹점 계약체결일로부터 산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직전 사업연도 말 『총각네야채가게』와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85,777,259	185,777,259	0
광고	(비공개)	2024.01.01.~2024.12.31	185,777,259	185,777,259	0
판촉	없음	-	-	-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또는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02-2052-0172

2) 가맹금 예치절차

☞ 당 사가 정한 예치 기관의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 당사는 예치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은행기관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여건에 따라 당사는 은행에 예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증권을 제시하여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 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자연의모든것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여부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충각네야채가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 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해당 없음 : 당사는 수령하는 최초 가맹금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해당 없음 : 당사는 수령하는 보증금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해당 없음 : 당사는 수령하는 예치가맹금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면적 49.5m ² 당 (구. 약 15평)	면적 3.3m ² 당 (구. 약 1평)		
합계		65,600,000 ~75,700,000	4,373,333 ~5,046,666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면적 49.5m ² 당 (구. 약 15평)	면적 3.3m ² 당 (구. 약 1평)		
인테리어	(권유) 가맹본부	20,000,000 ~25,000,000	1,333,333 ~1,666,666	시공시작일 50% 시공완료일 50%	
간판	(권유) 가맹본부	1,600,000 ~2,200,000	106,666 ~146,666	시공시작일 50% 시공완료일 50%	
냉동·냉장 장비	(권유) 가맹본부	20,000,000 ~24,000,000	1,333,333 ~1,600,000	시공시작일 50% 시공완료일 50%	
기타 소모품 등	(권유) 가맹본부	1,500,000 ~2,000,000	-	주문과 동시	필수 구입
POS 기기	(권유) (비공개)	2,500,000	-	가맹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필수 구입
초도물품	(요구) 가맹본부	20,000,000	-	주문 전 입금	필수 구입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관리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냉장/냉동 장비 등 제반 시설공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시공·구입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당사의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POS 기기 및 기타 소모품 : POS 기기 및 기타 소모품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기준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POS 기기는 당사가 정한 POS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귀하가 직접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냉난방시설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당사의 직원관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 사가 정하는 기타 소포품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설비, 장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412,500	매월 당월 1일	종료 시 잔여일수 정산반환	관리비로 비용소요	1일~말일 기준 당월 1일 선불 납부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판촉료	가맹본부	광고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광고·판촉 실시 후 반환 안됨	광고·판촉비로 비용소요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광고 및 판촉 활동> 세부 내용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정기교육:100,000 특별교육:교육실비	추후 공지	교육 후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1일 1인 기준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가맹본부	특별한 사유 발생시 협의 분담	시공 시작 전일 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시공비로 비용소요	<분담기준> 가맹본부 :20%~40% 가맹점주 :80%~60%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발생 시 산정	시공 시작 전일 까지	시공 후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보수사항 발생 시 귀하 전부 부담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7.2% (월 0.6%)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자연이자로 반환 안됨	자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 대가 내역 :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 경영지도,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가 당 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이며,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산식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기간 내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비율이며,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X100] 산식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 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액가맹금에는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임차료, 세금, 광고비와 판촉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해당 없음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당사와 양수인의 잔여계약기간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그에 따른 가맹비, 개업점 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부담하고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당사는 계약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기한 내에 당사가 정한 종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료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영업표지가 표시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이의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합니다.
- ②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직접 철거하거나 위반일 1일당 **금 이십만원(W200,000)<부가세없음>**의 위약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기타 당사의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당사에 반품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귀하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계약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⑥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및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1)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요구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 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당 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원·부재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여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에게 당 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요구)하는 품목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특수관계인 포함)와 거래할 것을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1)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 당 사는 귀하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요구) 또는 권장(권유)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 당 사가 귀하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요구)하는 대가로 당 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가공식품(반찬류 일체)	우유,주스,커피 등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왼쪽에 기재된 상품만 판매가능	1차 : 구두 경고, 2차 : 2회 이상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건해산물(건어포류 일체)	반찬, 소금류		
견과류	육가공류		
곡물	유지류,장류,젓갈류		
연목류	포장상품(강냉이,한과류)		
간편조리식품	가공란, 캡슐란		
김치,떡,만두류	과채류, 근채류		
나물류, 버섯류,양채류	냉동선어류		
엽채류, 해초류	해물패류, 생물류		
청과류(국산,수입)	육가공류, 한우부산물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2회 이상 서면 시정조치 2차 : 물품공급의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귀하의 가격결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과일 및 야채를 주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종	충각네야채가게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00m 보호	가맹계약서 [별지 1] 지도로 표시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합의하는 방법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알리는 절차	합의하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 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귀하에게 서면 통지→귀하와 합의→영업지역 변경 완료(→가맹점사업자 미동의 시 →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귀하와 합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2]와 같습니다.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3]과 같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86.99%	7.00%	0.73%	5.27%

※ 당 사의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액은 가맹사업 현황과 연계하여 영업개월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 41개 매장 만을 대상으로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기타 오프라인의 직영점 매출액은 직영사업 현황과 연계하여 영업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직영점 3개 매장 만을 대상으로 실제 매출액을 산정 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2023년	81.77%	2.73%

※ 당 사는 오프라인으로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자사 쇼핑몰과 타사 쇼 핑몰을 모두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용상품을 제외하고 각각 해당 전용상품 비중만을 기재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24개월)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 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24개월)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 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가맹점사업자 임의해지 등 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와 귀하는 공사가 개시되기 3일 전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 또는 당사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1. 귀하에게 물품공급 중단사유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한 경우.
2.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귀하가 가맹점을 임의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양도 및 상속으로 인해 가맹점운영권이 제3자의 명의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귀하 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10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당사가 정한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귀하가 허용한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감독 및 시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귀하가 인력 운영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귀하가 교육의무를 해태 하거나 교육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7. 귀하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하게 한 경우
8. 귀하가 회계자료 등 통보의무와 출입허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귀하가 영업의 표준화와 권장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귀하가 무단으로 휴업하거나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1. 귀하가 노후된 시설의 보수·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2. 귀하가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정하는 즉시 물류공급을 중단하는 사유

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파산하는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3. 귀하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귀하의 영업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
5. 귀하가 임의로 자체 구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품질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의 인허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8. 귀하의 채무액이 물품외상매입 채무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9. 귀하가 로열티 및 물품 대금 등을 연체하거나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10. 귀하가 자점매입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사입한 경우
11. 귀하가 광고나 판촉행사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1. 당 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 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당 사 또는 귀하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 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 임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귀하가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계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상호 서면 요청에 의거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여부 및 동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 운영권 등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1개월 이내에 양수인과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그에 따른 가맹금 입금 → 개점 전 교육 이수 완료 → 개점승인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 운영권 등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1개월 이내에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교육비 부담 및 개업시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귀하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대리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비용은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경영은 당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당사 위탁경영만 가능 : 요청 시 심사 후 결정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동일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과일 및 야채를 주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충각네야채가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희망할 경우 휴업시작 7일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1:00	연중무휴	3일 전 승인 요청 시 조정가능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제한 없음	직접근무	49.5㎡(15평) 기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총금액의 30%	광고총금액의 70%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분담금 통지서 발송 →수령 후 2주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분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총금액의 50%	광고총금액의 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 제작	판촉물 제작비 총 비용	해당 없음	판촉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분담금 통지서 발송 →수령 후 2주일 이내 지급	단, 가맹본부 주관으로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행사에 한하며,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권 수수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비용의 10%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비용의 90%		
	할인·경품· 포인트적립 판촉행사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서비스 진행 안함

※ 당사는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인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시행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사가 전체 가

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 이상 동의를 받은 광고 및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동의 비율 기준에 따라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전국 및 지역 단위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5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판촉행사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 사의 기획으로 전국 및 지역 판촉행사로 진행하지 않고 귀하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품의 할인, 경품·기념품 등 제공, 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개별 행사를 진행한 경우, 이 판촉행사에 대한 전체 비용은 모두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등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해당 고객에게 포인트 사용 및 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후 포인트 미 반환 등으로 당 사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귀하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고,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당 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시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및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귀하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그 권리의 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3)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4) 본 계약으로 인하여 로열티,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연 7.2%(월 0.6%)**로 합니다.
- 5) 당 사 또는 당 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 사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9.5㎡(구. 15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5]일 내외	65,600,000 ~ 75,700,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5(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44(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1~43(13일)	자체비용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30(1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9(1일)	비용 없음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산출 - 냉동·냉장 장비 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6~28(2일)	비용 없음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D-6~25(20일)	인테리어:10,000,000 ~12,500,000 간판:800,000 ~1,100,000 냉동·냉장 장비: 10,000,000 ~12,000,000 기타 소모품등: 1,500,000 ~2,000,000 POS 기기:2,500,000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개점 전 교육 완료 - 개점 승인 - 각종 소모품 및 집기류 입고 - POS 기기 입고 - 초도물품 입고	D-1~5(5일)	인테리어:10,000,000 ~12,500,000 간판:800,000 ~1,100,000 냉동·냉장 장비: 10,000,000 ~12,000,000 초도물품비:20,000,000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비용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본부 부담 비용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다만,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해당 없음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해당 없음 : 당사는 『충각네야채가게』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총각네야채가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교육내용 및 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총각네야채가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약 10일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1명	
정기 교육	1일	100,000	추후 공지	1인 기준
특별 교육	추후 통지	교육 실비	추후 통지	강사비, 교육장 임대료,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 워크샵의 비용은 내용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정하며, 교육내용 및 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점포명	지역	소재지
1	대모산점	서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22, 829동 지1층, 제에스4비 1-401호(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2	옥수점	서울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08, 1층(옥수동)
3	마포레미안포스티지점	서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상가 4동 128호(아현동, 마포레미안푸르지오)
4	송도문화로점	인천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제204동 1층 4111호(송도동, 글로벌 캠퍼스푸르지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당 사가 운영 중인 전체 직영점 수 및 평균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일)

연도	직영점 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4	320

※ 당 사가 운영하는 전체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산정 기준과 연계하여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 직영점 수	산출 직영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4	3	825,773,927

※ 당 사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직영점에서 운영하는 POS 상의 매출액] 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직영점의 매출액은 개점 초기 매출로 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영업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직영점의 매출액은 월 평균 매출액 산정 후 이를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직영점 매출액은 당 사가 추정한 매출로 실제 직영점에서 올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3년(17기), 2022년(16기), 2021년(15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가맹본부가 대리점이나 일반소매점을 통해 대체재 상품을 판매하는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기타 온라인몰을 통해 대체재 상품을 판매하는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